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개관

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지재권법)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한 법적 도구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법과 그 하위에 있는 시행령, 결정문,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규칙들을 해석하는 하위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은 2005년 지재권법을 처음 도입하였고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준비를 위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 되었다. 지재권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EVFTA) 체결에 따라 요구되는 국제적인 서약을 준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고자 2009년과 2019년에 개정을 하였다.

지재권 체계는 다음의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다:

- 등록과 보호: 이 체계는 지식재산권관청 (과학기술부 산하)과 베트남 저작권청 (COV)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 운영한다.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는 지식재산권 관청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 상업화: 보통 라이선스, 양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타 상업계약과 같은 지식재산권 계약을 의미한다.
- 행정, 민사, 형사 수단을 통한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

2. 집행 당국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침해 대응 수단은 행정 단속이다. 현재 베트남의 지재권 법규정은 EVFTA를 준수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개정이 예상된다. 지재권법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은 여러 개가 있는데 법원, 조사단, 시장관리국, 세관, 경찰, 인민위원회 등이다. 또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있다.

Ⅰ 지재권의 확보와 침해의 종류

1. 지재권의 확보

베트남 지재권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청에서 관장
- 산업재산권 (상표, 디자인, 특허, 지리적 표시) - 지식재산권관청에서 관장
- 식물신품종권 - 식물신품종청에서 관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지재권은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필수이다.

Ⅰ 오프라인 위조품 대응 행위

1. 시장조사와 조사

(1) 시장조사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과 기타 침해행위에 대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보통 시장조사는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를 포함한다. 베트남에서는 우선 대도시 5개, 즉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 외에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많이 유통되는 지역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

(2) 심층조사

대규모 침해자의 경우 침해 대응을 위한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심층조사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조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심층조사의 결과는 조사관의 기술과 전략, 그리고 샘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자의 예산이 얼마인지에 달려있다.

2. 지재권 침해 감정평가

실무상 침해단속기관은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침해건의 경우 지재권 침해에 대해 결론 내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재권 침해감정평가를 해주는 전문가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

(1) 베트남 지재권 연구기관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

VIPRI (이하 '비프리'로 약칭) 는 지재권 침해를 다루는 행정기관인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전문가 센터

(Expertise Center for Copyright, Related Rights :ECCR)

ECCR 은 베트남 저작권청 산하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전문가의견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3. 행정 단속

행정단속은 시간과 비용에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에 권리소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응방법이다. 진행 중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목표로 중소 규모의 침해에 대응하는데 있어 적합한 방법이다.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 침해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수월하나 부정경쟁행위, 지리적 표시, 특허, 저작권 침해는 대응을 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단속기관이 아직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 형사기소

형사대응은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실무상 형사소송은 보통 단순한 침해건보다는 위조품의 생산자/도매업자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기소는 베트남에서 매우 드문데 최근 몇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형사기소는 위조품과 상표/저작권 침해에 가능하다. 실무상 관계당국은 위조품이 소비자와 대중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는 사건 (약품, 가솔린, 소비재)에 우선순위를 둔다.

5. 민사 소송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이 분쟁대응에 있어 첫 단계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 분쟁과 비교해 보았을때 아직 지재권 관련한 민사건은 많지 않다. 이는 지재권에 대한 판사들의 경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큰 비용 등이 그 이유이다. 베트남은 아직 지재권 특화 법원이 없고 인민법원의 경제법원부서가 지재권 분쟁을 다루고 있다. 보통 매년 지재권 관련 민사건은 10건 정도이다.

그럼에도 예비적금지명령, 손해배상, 공개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장점으로 민사를 이용하는 권리소유권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6. 국경보호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과 수출품에 대해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세관은 권리소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조품이나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만일 세관이 보류, 조사, 감시 과정에서 지재권 위조품을 확인하면 행정처벌의 집행을 위해 행정제재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Ⅰ 위조품과 침해품에 대한 온라인 침해 대응

베트남 소비자들은 주로 4개의 수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독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상거래 앱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는 쇼피, 라자다, 티키, 센도가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다.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많이 사용되는 쇼핑의 창구이고 모바일 상거래 앱은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잘로,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다.

이런 전자상거래의 호황에 편승하여 온라인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대응이 더 힘든데 그 이유는 거래자가 수백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중 몇 개의 계정이 게시중단 조치가 되면 빠르게 이러한 계정은 비활성화하고 모든 거래의 증거를 삭제한 후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서 침해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온라인 증거 수집

(1) 온라인 조사와 키워드

일반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조사는 구글 같은 강력한 검색 엔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검색의 첫 단계는 키워드 입력이다. 키워드가 정확할수록 더 관련성이 있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온라인 침해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침해대응 행위를 취할때 권리소유권자는 이러한 대응조치가 오프라인 침해대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대규모 침해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침해대응을 조심스럽게 조정하여 진행해야 하다.

2. 온라인 게시중단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적권 정책과 게시중단 절차를 통한 게시중단 요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대다수 플랫폼에서의 지적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지적권 침해품의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와 정보통신부의 규정을 따른다.

(2)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적권 침해 보고

베트남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지적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게시중단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권리소유권자는 각 플랫폼의 요건에 맞추어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3) 베트남에서 “.vn” 도메인 이름 분쟁

사이버스쿼팅은 베트남에서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 기업의 유명한 상표 또는 비슷한 상표를 포함한 “.vn”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가 그렇다. 사이버스쿼터는 상표소유권자의 명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끌고 판매량을 높이려고 하거나 상표소유권자에게 돈을 받고 도메인을 이전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상표를 허가없이 도메인이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다.

(4) 사이트 차단

저작권 소유권자는 관계당국에 중간서비스공급업자 (ISP)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 및 중지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권리소유권자의 고소장을 받으면 관계당국은 침해사실을 확인 후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의 방송전자정보 당국은 침해 플랫폼에 대해 경고를 게시하고 침해 게시물 삭제에 대한 기한을 설정한다. 플랫폼이 이러한 기한 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전자 정보 당국은 베트남 ISP에 공식서한을 보내 침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절차는 현지와 외국 플랫폼 모두에 적용이 된다.

Ⅰ 기타 집행 수단

1.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지재권법 198.1d 조에 따르면 권리소유권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미리 중재를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중재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은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을 통해 이러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CONTENTS

I.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개관	1
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지재권법)	3
2. 집행 당국	4
3. 관련 법규정	6
3.1 법률 (Code)	6
3.2 법 (Law)	6
3.3 시행령 (Decree)	6
3.4 시행규칙과 합동시행규칙 (Circular and Joint Circular)	7
II. 지재권의 확보와 침해의 종류	9
1. 지재권의 확보	11
1.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1
1.2. 상표	11
1.3. 특허	12
2. 침해의 종류	13
2.1. 저작권	13
2.2. 저작인접권	14
2.3. 상표	14
2.4. 특허	15
2.5. 위조	16
III. 오프라인 위조품 대응 행위	17
1. 시장조사와 조사	19
1.1. 시장조사	19
1.2. 심층조사	20

2. 지재권 침해 감정평가	21
2.1. 베트남 지재권 연구기관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	21
2.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전문가 센터 (Expertise Center for Copyright, Related Rights :ECCR)	21
3. 행정 단속	22
3.1. 관할권	22
3.2. 가능한 처벌과 구제수단	24
3.3. 절차	25
3.4. 직권 행정단속	28
4. 형사기소	29
4.1. 지재권 관련한 형사 범죄	29
4.2. 처벌	33
4.3. 절차	35
5. 민사 소송	38
5.1. 관할권	38
5.2. 구제 수단	39
5.3. 절차	43
사례 연구	45
6. 국경보호	47
6.1. 보류 절차	48
6.2. 세관 교육	49

IV. 위조품과 침해품에 대한 온라인 침해 대응	51
1. 온라인 증거 수집	55
1.1. 온라인 조사와 키워드	55
1.2.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례 연구	56
2. 온라인 게시중단	58
2.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적권 정책과 게시중단 절차를 통한 게시중단 요청 사례 연구	58
2.2.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적권 침해 보고	61
2.3. 베트남에서 “.vn” 도메인 이름 분쟁	61
2.4. 사이트 차단	62
V. 기타 집행 수단	63
1.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65
2. 경고서한과 합의	66

I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개관

- 0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지재권법) _ 03
- 02. 집행 당국 _ 04
- 03. 관련 법규정 _ 06
 - 1) 법률 (Code) _ 06
 - 2) 법 (Law) _ 06
 - 3) 시행령 (Decree) _ 06
 - 4) 시행규칙과 합동시행규칙 (Circular and Joint Circular) _ 07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베트남은 대륙법 (civil law) 체계이기 때문에 법의 기본이 법률과 규정으로 알려진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한 법적 도구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법과 그 하위에 있는 시행령, 결정문,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규칙들을 해석하는 하위 법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다.

베트남은 2005년 지재권법을 처음 도입하였고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준비를 위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 법은 베트남의 지재권 체계를 기본적인 국제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지재권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EVFTA) 체결에 따라 요구되는 국제적인 서약을 준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고자 2009년과 2019년에 개정하였다.

영미법 국가의 ‘사용주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 산업디자인, 발명은 베트남 지식재산권관청 (IP Vietnam)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등록 체계는 상당히 잘 정립되어 있고 절차가 간단하나 업무 적체로 인한 심사지연이 큰 문제이다. 이에 반해 지재권의 집행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한계점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지재권 체계는 다음의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다:

- 등록과 보호: 이 체계는 지식재산권관청 (과학기술부 산하)과 베트남 저작권청 (COV)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 운영한다.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는 지식재산권 관청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 상업화: 보통 라이선스, 양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타 상업계약과 같은 지식재산권 계약을 의미한다.
- 행정, 민사, 형사 수단을 통한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

02 집행 당국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침해 대응 수단은 행정 단속이다. 관련 정부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당국이 조사를 하여 침해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린다. 현재는 이러한 행정단속이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민사 대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예비적 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침해자로부터 공개 사죄 등 민사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처벌의 역지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스쿼팅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문제에 대해서도 민사구제 수단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지재권 법규정은 EVFTA를 준수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개정이 예상된다. EVFTA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통해 베트남이 지재권 소유권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침해의 증가로 인해 베트남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틀과 실용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CPTPP와 EVFTA가 요구하는 지재권 보호의 기준에 따라 관련 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예상된다.

지재권법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은 여러 개가 있는데 법원, 조사단, 시장관리국, 세관, 경찰, 인민위원회 등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관은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시장관리국 (Market Management Bureau: MMB)** - 산업무역부 산하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적 상품에 대해 단속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 **경제경찰 (Economic Police: EP)** - 시장관리국과 더불어 시장에 유통되는 불법적 상품을 단속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중앙, 지역, 지방 차원의 조직이 있다. 주로 매우 심각한 침해건을 다루는데 형사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 즉 대규모 침해, 조직적인 침해자,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침해 (제약, 식품 등)건에 주력한다.
- **지재권 조사단 (IP Inspectorates)** - 중앙과 지역 차원의 조직이 있다.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생산과 거래에 대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국경에서 발생한 침해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과학기술부 조사단은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다루고, 문화체육부 조사단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를 다룬다.

-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s)** - 지역, 시, 지방 차원의 조직이 있으며 보통 지적권 침해 상품의 생산과 거래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다.
- **세관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of Vietnam)** - 재무부 산하로 베트남에서의 수출입 활동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침해품의 수출입에 대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있다.

복잡한 침해건의 경우 권리소유권자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연구기관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 VIPRI)** 에서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전문가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전문가센터 (Expertise Center for Copyright, Related Rights : ECCR)** 에서 전문가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 기관으로부터의 침해감정평가서는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단속기간이 침해에 대해 평가를 하고 제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03 관련 법규정

베트남에서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 주요한 법적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Code)

- 민법 (Civil Code No. 91/2015/QH13)
- 민사절차법 (Civil Procedure Code No. 92/2015/QH13)
- 형법 (Penal Code No. 100/2015/QH13)
- 형사절차법 (Penal Procedure Code No. 101/2015/QH13)

2) 법 (Law)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No. 50/2005/QH11)
- 경쟁법 (Competition Law No. 23/2018/QH14)
- 관세법 (Customs Law No. 54/2014/QH13)
- 행정위반처리에 관한 법 (Law on Handling Administrative Violations No. 15/2012/QH13)
- 항소와 폐지에 관한 법 (Law on Appeal and Denunciation No. 02/2011/QH13)

3) 시행령 (Decree)

- 시행령 105 (Decree No. 105/2006/ND-CP)
- 시행령 103 (Decree No. 103/2006/ND-CP)
- 시행령 22 (Decree No. 22/2018/ND-CP)
- 시행령 88 (Decree No. 88/2010/ND-CP)
- 시행령 98 (Decree No. 98/2020/ND-CP)
- 시행령 99 (Decree No. 99/2013/ND-CP)
- 시행령 131 (Decree No. 131/2013/ND-CP)

- 시행령 08 (Decree No. 08/2015/ND-CP)
- 시행령 43 (Decree No. 43/2017/ND-CP)
- 시행령 51 (Decree No. 51/2019 /ND-CP)
- 시행령 15 (Decree No. 15/2020/ND-CP)

4) 시행규칙과 합동시행규칙 (Circular and Joint Circular)

- 시행규칙 01 (Circular No. 01/2007/TT-BKHHC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시행규칙 263 (Circular No. 263/2016/TT-BTC of the Ministry of Finance)
- 시행규칙 11 (Circular No. 11/2015/TT-BKHHC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시행규칙 13 (Circular No. 13/2015/TT-BTC of the Ministry of Finance)
- 합동시행규02 (Joint Circular No. 02/2008/TTLT-TANDTC-VKSNDTC-BVH TT&DL-BKH&CN-BTP)
- 합동시행규칙 01 (Joint Circular No. 01/2008/TTLT-TANDTC-VKSNDTC-BC A-BTP)
- 합동시행규칙 14 (Joint Circular No. 14/2016/TTLT-BTTTT-BKHHCN)
- 합동시행규치 05 (Joint Circular No. 05/2016/TTLT-BKHHCN-BKHDT)

II

지재권의 확보와 침해의 종류

01. 지재권의 확보 _ 11

-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_ 11
- 2) 상표 _ 11
- 3) 특허 _ 12

02. 침해의 종류 _ 13

- 1) 저작권 _ 13
- 2) 저작인접권 _ 14
- 3) 상표 _ 14
- 4) 특허 _ 15
- 5) 위조 _ 16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01 지재권의 확보

베트남 지재권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청에서 관장
- 산업재산권 (상표, 디자인, 특허, 지리적 표시) - 지식재산권관청에서 관장
- 식물신품종권 - 식물신품종청에서 관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지재권은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필수이다.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지재권법 14.1조에 따르면 문학, 예술, 과학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생성 및 고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증명서가 있으면 분쟁시 저작 소유권에 대해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은 저작경제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되고 특정한 물리적 형태에 고정되는 즉시 등록여부 및 내용물, 질, 형태, 형식, 언어와 상관없이 형성이 된다.¹⁾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해를 미치지 않고 극, 음성과 시각적 고정, 코드화된 프로그램의 전송하는 방송과 위성 신호가 고정되거나 보여지는 때 형성된다.²⁾

2) 상표

상표는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지식재산권관청에 등록을 해야한다.³⁾ 예외사항이 있는데 저명성을 인정받은 상표는 등록 없이도 보호를 받는다. 마드리드 협약과 프로코톨에 따라 베트남은 국제출원체제를 통한 출원권을 받는다.

상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를 받게 된다:

1) 지재권법 6.1조
2) 지재권법 6.2조
3) 지재권법 6.3a조

- 문자, 단어, 그림, 홀로그램을 포함한 이미지,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색으로 나타낸 시각적인 표지
- 타인의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와 식별력 존재

상표 등록은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한의 제한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

3) 특허

베트남 지재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은 특허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 발명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명 특허로 보호를 받게 된다.
- 실용신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용신안 특허로 보호를 받게 된다.
- 산업디자인 -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특허로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 발명특허 - 20년
- 실용신안특허 - 10년
- 디자인특허 - 5년 (5년씩 2번 갱신 가능하므로 총 15년)

특허 등록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발명과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거해 출원이 가능하며 디자인 출원도 헤이그 체제를 통해 국제출원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특허협력조약과 헤이그 체제 모두 가입국이므로 이 두 국제체제를 통해 베트남에서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이 가능하다.

02 침해의 종류

1) 저작권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⁴⁾:

- 저작물 도용
- 저작자 사칭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공표와 배포
-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 저작물의 공표와 배포
- 저작자의 명예와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편집, 수정, 왜곡
- 저작자와 저작권 소유권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재생산⁵⁾
-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 작성⁶⁾
- 저작권 소유권자의 동의 또는 지재권법에 따른 로열티 같은 금전적 보상 없이 저작물을 사용⁷⁾
- 로열티, 금전적 보상 등의 지급 없이 저작물의 대여
- 저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복제, 사본의 제작, 배포, 전시 또는 대중에게 통신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송신
- 저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공표
- 저작권 소유권자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기술적 보호 수단의 고의적 파손 또는 비활성화
- 저작물에 있는 전자저작권관리정보의 고의적 삭제 및 변경
- 저작권 소유권자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적 보호수단을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생산, 조립, 변형,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대여하는 행위로 이러한 장치가 해당 기술적보호수단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을 이유가 있을 때

4) 지재권법 28조

5) 지재권법 25.1a와 25.1dd조에 따른 예외 사항 제외. 예를 들면 상업적 목적이 없는 교육 목적의 재생산

6) 지재권법 25.1i에 의거해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변환시키는 작업 제외

7) 지재권법 25.1조에 예외와 제한사항에 대해 규정

- 저작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저작물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 저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사본의 수출, 수입, 또는 배포

2) 저작권접권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로 간주된다⁸⁾:

- 실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방송기관의 권리의 도용
- 실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방송기관의 사칭
- 고정된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실연자, 녹음/녹화의 제작자, 방송기관의 동의 없이 공표, 생산, 배포
- 실연자의 명예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연을 변경, 편집, 왜곡
- 실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방송기관의 동의 없이 고정된 공연, 녹음/녹화, 또는 방송의 복제 또는 발취
- 저작권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전자저작권관리 정보의 고의적 삭제 또는 변경
- 저작권접권 소유권자가 사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고의적 파손 또는 비활성화
- 전자저작권관리 정보가 저작권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변경 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을 이유가 있을 때 공연, 고정된 공연의 복제본, 녹음/녹화를 공표, 배포, 수입
- 장치가 코드화된 프로그램을 보내는 위성 암호를 불법적으로 해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을 이유가 있을 때 이러한 장치의 생산, 조립, 변경,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대여
- 합법적 유통업자의 동의 없이 코드화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위성 신호를 의도적으로 받거나 전달

3) 상표

다음의 행위는 상표침해로 간주된다⁹⁾:

8) 지재권법 35조
9) 지재권법 129조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¹⁰⁾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이러한 사용이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 또는 관련있는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이러한 사용이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저명상표의 번역과 음역을 포함하여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모든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로 이러한 사용이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자와 저명상표의 소유권자와의 관계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때

4) 특허

다음의 행위는 특허침해로 간주된다¹¹⁾: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받는 발명의 사용¹²⁾, 보호받는 산업디자인의 사용¹³⁾, 또는 보호받는 산업디자인과 큰 차이 없는 디자인의 사용
- 발명과 산업디자인에 대한 임시적 권리에 따라 권리소유권자가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발명과 산업디자인의 사용

10) 지재권법 124.5조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다음을 지칭한다:

- 상표는 상품, 포장, 사업시설, 거래 문서 등에 부착
-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유통, 판매, 홍보, 저장
- 상표를 부착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

11) 지재권법 126조와 131조

12) 지재권법 124.1조에 따르면 발명의 “사용”은 다음을 지칭:

- 보호받는 상품의 생산
- 보호받는 과정의 적용
- 보호받는 상품 또는 보호받는 과정으로 생산된 상품의 효용성 사용
- 상품을 유통, 홍보, 판매, 저장
- 상품의 수입

13) 지재권법 124.2조에 따르면 산업디자인의 “사용”은 다음을 지칭:

- 보호받는 산업디자인을 체화한 외관을 가진 상품의 생산
- 상품의 유통, 홍보, 판매, 저장
- 상품의 수입 Importing the products.

5) 위조

베트남법에 따르면 위조는 다음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 위조품
- 지식재산권의 위조

위조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¹⁴⁾:

- 사용이 상품의 특성 또는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쓸모가 없는 상품, 또는 그 사용이 발표 또는 등록된 상품이 아닌 경우
- 품질 표시, 상품의 설명,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주된 성분의 양이 라벨이나 포장에 표시된 것 또는 기술규정 또는 품질기준에 표시된 최소 기준과 비교했을 때 70% 또는 그 이하인 상품
- 2016년 약사법 2조 33항에 정의된 위조약품과 동법 2조 34항에 정의된 위조 약초 재료
- 활동성 있는 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동물약 또는 농약, 등록된 활성성분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동물약 또는 농약, 라벨 또는 포장에 기재된 성분과 다른 활성성분을 포함한 동물약 또는 농약, 관련 기술규정, 또는 발표 또는 등록된 품질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70% 이하만 활성성분을 포함한 동물약 또는 농약
-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의 위조된 이름과 주소, 위조된 등록 번호, 상품의 신고 번호 또는 바코드, 다른 업체 상품의 위조된 포장, 또는 제조, 포장, 조립 장소 또는 출처의 위조된 정보를 포함한 라벨과 포장을 가진 상품
- 상품의 위조된 스탬프, 라벨, 포장

지식재산권의 위조는¹⁵⁾ 위조상표 또는 위조 지리적표시를 부착한 상품과 해적판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 상표위조는 지재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별이 안 가는 표지를 부착한 상품 또는 포장이다.
- 해적판 상품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만들어진 복제품을 지칭한다.

14) 시행령 98의 3.7조

15) 지재권법 213조

III

오프라인 위조품 대응 행위

- 01. 시장조사와 조사 _ 17
- 02. 지재권 침해 감정평가 _ 21
- 03. 행정 단속 _ 22
- 04. 형사기소 _ 29
- 05. 민사 소송 _ 38
- 06. 국경보호 _ 47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01 시장조사와 조사

1) 시장조사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과 기타 침해행위에 대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보통 시장조사는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를 포함한다. 베트남에서는 우선 대도시 5개, 즉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 외에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많이 유통되는 지역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

시장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방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온라인 조사 외에도 권리소유권자의 현지 판매팀, 공식판매업자를 통해 침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조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권리소유권자의 침해대응전략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시장조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보통 시장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위조품을 거래하는 거래자 (소매/도매)의 수
- 위조품 거래자의 연락처 정보
- 각 거래자가 거래하는 위조품의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 권리소유권자의 지재권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사용의 현황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침해자는 대규모/소규모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대량의 위조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도소매업자로 이들을 통해 공급업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침해자를 대규모 침해자로 분류한다. 그 외 소량의 위조품만 판매하고 이들을 통해서 공급업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소매상들은 소규모 침해자로 분류된다. 침해자 형태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진다.

2) 심층조사

대규모 침해자의 경우 침해 대응을 위한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기소가 가능한 침해건의 경우에는 심층조사가 필수이다. 심층조사를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단 조사대상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침해의 규모에 대한 정보 (재고량, 판매량, 창고 위치, 공급업자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업자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찾는다면 위조품의 출처에서 조사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조품 확인을 위한 샘플구매 및 감시 같은 심도 있는 조사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층조사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조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심층조사의 결과는 조사관의 기술과 전략, 그리고 샘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자의 예산이 얼마인지에 달려있다. 긍정적인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02 지재권 침해 감정평가

실무상 침해단속기관은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침해건의 경우 지재권 침해에 대해 결론 내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재권 침해감정평가를 해주는 전문가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

1) 베트남 지재권 연구기관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

VIPRI (이하 '비프리'로 약칭)는 지재권 침해를 다루는 행정기관인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다. 비프리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전문가의견 발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권리소유권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비프리에 침해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단속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비록 비프리 전문가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기관은 비프리 의견을 대다수 참고하여 지재권 침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침해감정에 대한 비프리 전문가의견은 보통 신청 후 특허의 경우 2개월, 디자인의 경우 1.5개월, 상표의 경우 1개월 후에 발급이 된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한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무상 빠른 심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전문가 센터

(Expertise Center for Copyright, Related Rights :ECCR)

ECCR은 베트남 저작권청 산하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전문가의견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ECCR은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일례로 침해감정에 대한 과정과 관련 비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도 아직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침해감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ECCR 책임자들과 사안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행정 단속

행정단속은 시간과 비용에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에 권리소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응방법이다. 진행 중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목표로 중소 규모의 침해에 대응하는데 있어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대규모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 침해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수월하나 부정경쟁행위, 지리적 표시, 특허, 저작권 침해는 대응을 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단속기관이 아직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관련해서는 행정단속은 보통 서적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같은 단순한 건을 다루는데 사용되고 있다. 캠코딩과 온라인에서의 침해건 (스트리밍 및 공유)은 현행 행정단속의 규정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점이 많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고소장 접수 이전에 단속기관과 먼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관할권

지재권법은 지재권 침해에 행정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각 단속 기관은 각각 다른 종류의 침해에 대해 관할권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행정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침해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적절한 기관이 어디인지 선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에 대해 아래에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i) 공안부 산하의 경제경찰 (Economic Police: EP)

경제경찰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형사건 뿐 아니라 경제경찰은 위조품과 지재권 침해품에 대한 행정단속도 담당한다. 경제경찰은 주로 위조품 생산, 대규모 재고 보유, 조직적 침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침해품 또는 침해행위와 같은 심각한 지재권 침해건에 대해 단속한다. 지재권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전문성으로 인해 경제경찰은 명백한 위조품이 아닌 침해건에 대해서는 다루기를 꺼려하는 것이 실정이다. 저작권 불법복제건의 경우 경제경찰은 문화체육부와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일단 사건을 접수하면 경제경찰은 침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나 심문을 한다. 결과에 따라 경제경찰은 해당 사건을 행정건으로 다룰지 형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제경찰에 의한 대응조치 시간은 다르다. 보통은 행정제재의 경우 1년 이하, 형사제재의 경우 1-3년이 소요된다.

(ii) 산업무역부 산하 시장관리국 (Market Management Bureau: MMB)

시장관리국은 전반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감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통 간단한 지재권 침해 또는 위조품의 거래에 대해 단속한다. 그러나 시장관리국은 조사권이 제한되어 있고 침해건에 대해 행정제재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침해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와 형사기소를 위해 경제경찰에 사건을 이관한다.

시장관리국은 침해품을 거래하는 거래자의 영업장에 행정급습을 하여 그에 따라 행정 제재 결정을 내린다. 시장관리국을 통한 대응행위는 보통 간단한 사건의 경우 2-4 주 정도면 제재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iii)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와 과학기술국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조사단

과학기술부 조사단은 베트남에서 지재권 침해를 다루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기관이다. 그러한 이유로 유사품, 특허/디자인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같은 복잡한 건을 다룬다. 위조품 같이 단순한 건은 경제경찰과 시장관리국이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유사품의 경우 권리소유권자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는 전문가 의견을 비프리로부터 받으면 좋다. 비프리로부터 호의적인 의견을 받으면 조사단과 진행하는 대응행위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

과학기술국 조사단은 과학기술부 조사단의 관리와 지도를 받는 시/지역 차원의 조사단 조직이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과학기술부 조사단은 침해자가 위치한 지역의 과학기술국

조사단에 사건을 배정한다. 각 시/지역별 과학기술국 조사단의 전문성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권리소유권자는 과학기술부 조사단을 돕기 위해 비프리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좋다.

(iv) 문화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과 문화체육국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oCST) 조사단

문화체육부와 문화체육국 조사단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을 하는 기관이다. 경제경찰, 시장관리국과 협력하여 침해자에 대한 조사와 행정급습을 한다. 이들의 침해 대응능력은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국 조사단과 상응하는 수준이다.

(v) 인민위원회 (베트남 각 지역별 현지 정부)

시와 지역 인민위원회는 지재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보통 가능한 제재가 단속기관의 권한을 넘어설 때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재결정을 발급한다.

(vi) 재무부 산하 세관

베트남 세관의 주된 기능은 국경통제로 위조품 수입 금지를 포함한다. 세관은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가능한 처벌과 구제수단

지재권 침해자는 주 되게 다음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¹⁶⁾ -

- 경고: 고의성이 없는 침해, 경미한 침해, 최초 침해, 정상참작요인이 있는 침해자의 경우 경고 처벌. 가장 관대한 처벌이며 억지효과가 거의 없다.
- 벌금: 가장 흔한 처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기준은 2억5천 베트남동 (한화 12,013,678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체에 부과되는 벌금 최고액은 개인 벌금의 두 배인 5억 베트남동 (한화 24,511,193원)이다. 이러한 벌금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침해자에게 억지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이다.

16) 지재권법 214조

또한 다음의 추가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

- 위조품, 원재료, 위조품 생산과 거래에 사용된 수단과 재료의 압수
- 일정 기간 침해를 저지른 분야에서 사업 중지

이 외에도 지재권법 214.3조에 따라 다음의 구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위조품, 원재료, 위조품 생산과 거래에 사용된 수단과 재료의 파괴 또는 비상업적 용도의 배포. 단 이러한 파괴와 배포가 권리소유권자의 정상적인 권리사용에 있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이동중인 침해품의 방출, 위조품과 위조품의 생산과 거래에 사용된 수단, 재료, 수입 수단의 침해요인 제거 후 강제적 수출

시행령 99와 시행령 131은 다음과 같은 더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 상거래의 장에서 침해 요소의 제거 및 제외: 상품, 광고판, 사업시설, 거래 문서 등에서의 침해 요인 제거¹⁷⁾
- 위반의 결과로 대중에게 알려진 잘못된 정보의 정정
-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 방송의 침해 사본의 강제적 제거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위반에서 얻어진 금전적 이득, 보상, 로열티의 배상

3) 절차

(i) 고소장 접수

관계당국은 직권으로 정기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관계당국은 권리소유권자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이 지재권 침해문제에 항상 주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소유권자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하여 정교한 침해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침해 발견시 적절한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다.

17) 시행규칙 11의 4.1a조

고소장 접수를 위한 일반적인 요건과 서류요건은 시행령 105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¹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99¹⁹⁾ 와 시행규칙¹¹²⁰⁾에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한다²¹⁾:

- 고소장 접수일
-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 (권리소유권자나 기업 대표)
- 고소장을 받는 당국의 이름
- 침해자의 이름과 주소
- 이해관계자의 이름과 주소 (있을 경우)
- 증인의 이름과 주소 (있을 경우)
- 침해받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정보: 지재권의 종류, 권리확보와 권리에 대한 요약
- 침해행위에 대한 간단한 정보: 침해발생일과 장소, 침해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침해 행위와 기타 정보 (있을 경우)
- 침해 대응을 위해 요구하는 대응조치
- 고소장과 같이 접수하는 서류와 증거 목록
- 고소인 서명과 도장 (있을 경우)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동반되어야 한다²²⁾:

- 권리소유권자의 침해를 주장하는 지재권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류. 등록증명서 사본이면 충분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구매 영수증과 함께 침해품의 샘플과 사진 그리고 침해행위를 담은 사진.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증거를 공증 받는 것이 좋다.

18) 시행령 105와 시행령 119

19) 시행령 99

20) 시행규칙 11

21) 시행령 105의 22조

22) 시행령 105의 23조

이 외에도 당국의 참고자료로 비프리 등에서 침해감정평가 전문가의견을 받아서 내는 것도 좋다.

충분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받으면 당국은 직접 조사를 해서 침해행위에 대해 확인을 한다. 만일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국은 침해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ii) 고소장 처리

시행령 99와 시행규칙 11은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고소장 처리에 대한 기한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고소장 서류가 충분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소유권자에게 예상되는 처리기간과 절차 및 적용 가능한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해야한다. 당국은 권리소유권자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²³⁾.
- 관계당국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²⁴⁾:
 - 증거수집, 사실확인, 침해의 성격 확인을 위해 직접 조사
 - 침해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서류, 설명, 증거, 주장, 또는 반박을 하라고 요청
 - 권리소유권자에게 사건에 대한 추가 서류, 증거, 비교를 위한 정품 샘플, 침해의심품의 침해 성격에 대한 확인 요청
 - 침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요청
- 복잡한 침해 또는 여러 침해자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 당국은 침해를 다루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²⁵⁾. 만일 고소장이 접수되고 당국이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당국은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고 사건을 종결한다²⁶⁾.

만일 침해가 확인이 되면 당국은 침해자에 대해 제재결정을 발급할 것이다.

23) 시행령 99의 25.2조

24) 시행령 99의 25조

25) 시행령 99의 29조

26) 시행령 99의 27.2조에 따라 합의는 지재산법을 준수해야하며 제3자, 소비자, 대중의 합법적 권리와 이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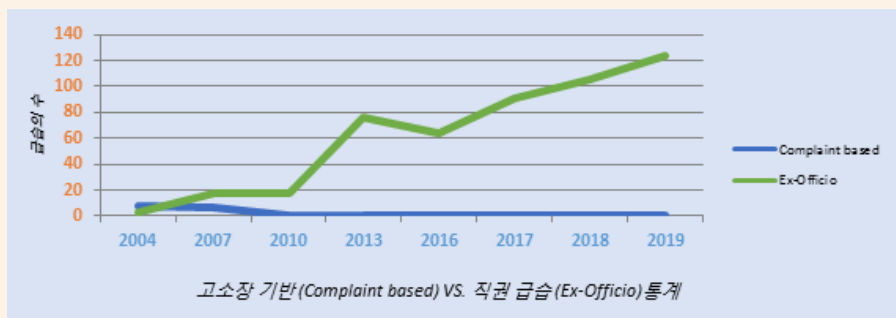
4) 직권 행정단속

권리소유권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행정단속을 하면 이는 추후 권리소유권자의 고소장 없이도 당국이 직권으로 위조품 또는 침해품에 대해 행정급습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직권으로 하는 행정급습은 최근 그 수가 증가해 왔으며 관계당국은 시장에서 권리소유권자의 눈과 귀가 되어 왔다. 직권으로 하는 급습에서 권리소유권자의 역할은 급습을 통해 압류한 위조품이 진짜 위조품인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 된다. 권리소유권자가 압류품이 위조 또는 침해품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당국은 침해자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리고 적용가능한 벌금 및 위조품의 파괴를 명령할 수 있다.

사례연구

침해대응 원동력 형성

권리소유권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웨어 생산업자인 독일 다국적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베트남에서 반위조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고소장에 기반한 급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추후 관계당국이 시장에서 이 회사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기가 되었다. 이후 관계당국은 이 회사의 고소장 없이도 직권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수 차례 급습을 하였다. 직권으로 행해지는 급습에 있어 권리소유권자가 해야하는 역할은 매우 최소화되며 단순하다.



	200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omplaint Based	19	0	0	0	0	0	0	0	0	0	0	0	0
Ex-Officio	41	11	3	17	26	55	76	78	94	64	91	105	124

[매년 급습의 수]

04 형사기소

형사대응은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실무상 형사소송은 보통 단순한 침해건보다는 위조품의 생산자/도매업자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기소는 베트남에서 매우 드문데 최근 몇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형사기소는 위조품과 상표/저작권 침해에 가능하다. 실무상 관계당국은 위조품이 소비자와 대중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는 사건 (약품, 가솔린, 소비재)에 우선순위를 둔다.

1) 지재권 관련한 형사 범죄

형사건은 위조품 뿐 아니라 상표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다. 지재권 침해에 관련된 형사 책임은 개인 또는 단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지재권 침해 행위는 2015년 형법에 상술되어 있다²⁷⁾.

(i) 위조품 생산과 거래

2015년 형법 192, 193, 194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조품을 생산/판매하는 개인과 기업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3천만 베트남동 (한화 1,470,397원) 가치의 위조품 또는 3천만 베트남동 이하이나 침해자가 이전에 특정한 경제범죄로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처벌이 아직 실효되지 않은 경우²⁸⁾
 -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미칠수 있는 경우
 - 5천만 베트남동 (한화 2,450,662원)이상의 불법적 이득
 - 1억 베트남동 (한화 4,901,325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
- 위조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약품일 경우 이러한 위조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²⁹⁾.

27) 2015년 형법 (Criminal Code No. 100/2015/QH13 is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7 November 2015)

28) 이와 관련된 경제범죄는 필수 포함

29) 2015년 형법 193조와 194조

(ii) 산업재산권 침해 (상표와 지리적표시 침해)

2015년 형법 226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 고의로 상표/지리적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개인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상업적 규모
 - 1억 베트남동 (한화 4,901,325원) 이상의 불법적 이득
 - 상표/지리적표시 소유권자에게 2억 베트남동 (한화 9,806,741원) 이상의 손해
 - 2억 베트남동 (한화 9,806,741원) 가치 이상의 침해품
- 고의로 상표/지리적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상업적 규모
 - 2억 베트남동 (한화 9,806,741) 이상의 불법적 이득
 - 상표/지리적표시 소유권자에게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 이상의 손해
 -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 가치 이상의 침해품

기업이 이전에 상표/지리적표시 침해로 행정 처벌 또는 실효되지 않은 처벌을 받았을 경우, 1억 베트남동 한화 4,901,325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침해행위, 1억 베트남동 이상 권리소유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1억 베트남동 이상 가치의 침해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iii)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

2015년 형법 225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 저작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i) 저작물 또는 녹음/녹화를 재생산 하거나 (ii) 저작물 또는 녹음/녹화의 사본을 대중에 배포한 행위를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상업적 규모
 - 5천만 베트남동 (한화 2,450,662원) 이상의 불법적 이득

- 저작권 소유권자에게 1억 베트남동 (한화 4,901,325원) 이상의 손해
 - 침해품의 가치가 1억 베트남동 이상
-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상업적 규모
 - 2억 베트남동 (한화 9,806,741) 이상의 불법적 이득
 - 저작권 소유권자에게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 이상의 손해
 -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 가치 이상의 침해품
- 만일 침해 기업이 이전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로 행정 처벌 또는 실효되지 않은 처벌을 받았을 경우, 1억 베트남동 (한화4,901,325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침해행위, 1억 베트남동 이상 권리소유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1억 베트남동 이상 가치의 침해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무상 2015년 형법이 위조품의 개념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국은 시행령 185의 3.8조에 따른 위조품의 개념정의를 따라 대응행위를 한다.³⁰⁾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위조품은 지재권 위조품, 잘못된 라벨이 부착된 상품, 품질/사용 가치에 있어서 위조품³¹⁾ 등을 포함한다. 품질/사용 가치에 있어 위조품은 다음과 같다:

- 표준 이하의 위조상품³²⁾
- 위조 상품³³⁾
- 사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상품 (또는 상품의 성격, 이름, 등록된 사용가치와 맞지 않는 사용가치)

지재권법 213조에 따르면 지재권 위조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표/지리적표시 위조품: 상품과 포장에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등록 받은 상표/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별이 안 가는 상표 또는 표지를 사용
- 해적판 상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만든 사본

30) 시행령 185

31) 시행령 185의 3.8dd와 3.8e조

32) 시행령 185의 3.8b조

33) 시행령 185의 3.8cdhk 3.8d조

시행령 185의 위조품의 개념정의를 지재권 위조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 위조품과 관련된 행위가 형법 192조에 따른 위조품 생산/거래 범죄를 구성하는지 또는 형법 225조와 226조에 따라 지재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공무원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보통 관계당국은 형법 192조에 따라 대응을 하기 위해 기술적 특징, 기능, 품질과 관련하여 위조품과의 비교를 위해 정품을 증거로 요구한다.

최근 시행령 185를 대체하기 위한 시행령 98이 발표가 되었다³⁴⁾. 시행령 98은 위조품의 정의에서 지재권 위조품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제 지재권 위조품과 관련된 범죄는 이러한 위조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표준 이하의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226조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

또한 법은 '상업적규모'에 대해 분명하게 개념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형사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보통 형사건은 관계당국의 의지, 견해, 정책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

사례연구

위조품 생산자에 대한 형사급습과 형사기소

권리소유권자는 헬스케어와 위생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이었다. 시장조사를 통해 우리는 시장에서 이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 회사를 대리하여 국립 경제경찰과 호치민 경제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6개월동안 위조품을 만드는 조직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도왔다. 이후 경제경찰은 호치민과 빈중에 있는 5개의 영업장 (생산시설과 창고 포함)에 대한 동시급습을 수행하였다. 몇 사람이 구속이 되었고 위조품 생산에 사용된 기계와 도구, 그리고 수천개의 위조품이 압류되었다. 압류된 물품의 총 가치는 대략 베트남동5,974,225,546 (한화 290,570,864원) 이었다.

급습 후 경제경찰은 권리소유권자에게 압류된 물품이 정품/위조품인지 여부, 그리고 가격표,

34) 시행령 98

품질기준 같은 정품과 관련한 서류, 침해평가를 위한 정품 샘플 및 형사기소를 위해 필요한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에 이관이 되었다.

교훈:

- 비록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는 하지만 심층조사를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특히 침해의 규모와 창고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층조사는 감시에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가가 수행해야한다. 심층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 한 후에 관계당국과의 대응에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후 조사 과정에 관계당국을 결부 시키면 된다.
- 권리소유권자는 급습, 상품 압류, 증거 확보에 있어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처벌

(i) 위조품 생산과 거래

- 일반 상품

	개인 침해자	기업 침해자
최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베트남동 (한화 4,901,325원)에서 10억 베트남동 (한화49,024,942원)의 벌금 • 1년 구속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베트남동 (한화 49,024,942원)에서 30억 베트남동 (한화 147,244,640원)
처벌 강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품 가치가 높을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끼친 해가 클 때, 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많을 때, 불법이득이 클 때, 재산손실이 클 때 • 침해가 조직적인 차원, 전문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 기관 이름의 남용, 사망 발생, 국경을 넘은 거래, 또는 위험한 재발 같은 경우로 이루어졌을 때 	
최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구속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억 베트남동 (한화441,733,922원) • 사업운영의 중지 (6개월에서 3년) • 사업운영의 영구적 중단
추가적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5천만 베트남동 (한화 2,450,662원)의 벌금 • 1-5년 동안 특정 직책, 직장, 업무 하는거 금지 • 재산 부분 또는 전체의 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억 베트남동(한화 9,806,741원)의 벌금 • 1-3년 동안 특정 분야에서 투자금 모집 및 사업 활동 및 운영 금지

- 위조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개인 침해자	기업 침해자
최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구속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억 베트남동(한화 49,024,942원)의 벌금
처벌 강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조품 가치가 높을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끼친 해가 클 때, 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많을 때, 불법 이득이 클 때, 재산손실이 클 때 침해가 조직적인 차원, 전문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 기관 이름의 남용, 사망 발생, 국경을 넘은 거래, 또는 위험한 재발 같은 경우로 이루어졌을 때 	
최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징역 사형 (위조 의약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백억 베트남동 (한화 981,630,938원) 벌금 사업운영 중단 (1-3년) 사업운영 영구 중단
추가적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 베트남동 (한화 4,901,325원)의 벌금 1-5년동안 특정 분야에서 직책을 맡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업무를 하는 행위 금지 재산의 일부나 전체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 1-3년동안 특정 분야에서 사업 활동 및 투자금 모집 금지

(ii) 산업재산권 침해 (상표와 지리적표시)

	개인 침해자	기업 침해자
최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만 베트남동 (한화 2,450,662)에서 5억 베트남동 (한화 24,511,193) 벌금 최대 3년까지 사회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 베트남동 (한화 24,511,193)
처벌 강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적 이득 클 때, 손해 크게 입혔을 때, 침해품의 가치가 클 때, 조직적인 수준에서 침해 자행, 재발된 침해 	
최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억 베트남동 (한화 49,024,942원) 최대 3년 구속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억 베트남동 (한화 245,236,095) 2년의 사업 중지
추가적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억 베트남동 (한화 9,806,741원) 의 벌금 1-5년동안 특정 분야에서 직책을 맡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업무를 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5억 베트남동 (한화 24,511,193원)의 벌금 1-3년동안 특정 분야에서 사업 활동 및 투자금 모집 금지

(iii)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

	개인 침해자	기업 침해자
최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만 베트남동 (한화 2,450,662원)에서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의 벌금 최대 3년까지 사회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
처벌 강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적 이득 클 때, 손해 크게 입혔을 때, 침해품의 가치가 클 때, 조직적인 수준에서 침해 자행, 재발된 침해 	
최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억 베트남동 (한화 49,024,942원) 최대 3년 구속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억 베트남동 (한화147,141,657원) 벌금 최대 2년 사업운영 중지
추가적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억 베트남동 (한화 9,806,741원) 의 벌금 1-5년동안 특정 분야에서 직책을 맡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업무를 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3억 베트남동 한화 14,707,482원) 벌금 1-3년간 특정 분야에서 사업 활동 및 투자금 모집 금지

3) 절차

권리소유권자가 확인된 침해자를 형사기소 하기를 원한다면 지재권 관련 형사기소를 위한 조사의 권한이 있는 베트남公安부 산하의 경제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i) 경제경찰

경제경찰은 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의 경제경찰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침해에 대해 조사를 한다:

경제경찰의 단계	위조의 규모 ³⁵⁾
중앙 -公安부 산하의 경제경찰부	1개 지역이나 시 이상에서 발생한 극도로 심각하고 복잡한 사건 및 국경을 넘는 범죄
지역 - 지역公安국 산하의 경제경찰국	지역 내에서 1개 지구 이상에서 발생한 침해 행위
지방 - 지방公安부처 산하의 경제경찰팀	지구 내에서 발생한 침해 행위

35) 범죄조사조직에 관한 법 Law No. 99/2015/QH13 on Organiz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Bodies) 19,20,21조.

경제경찰은 주 되게 다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범죄 행위에 관해 직접 조사하고 초기 정보를 확인
- 주택, 영업장, 위치, 차량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서류, 물건, 재산, 기타 물건이 있다고 알려진 곳을 수색
- 범죄 행위와 관련된 침해품, 물건, 기타 서류를 압류
- 혐의자에 대해 기소 및 혐의자 소환과 조사
- 혐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람에게 증언 요청
- 전문가 의견과 재산 평가 요청
- 범죄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사 종료

실무적으로 경제경찰은 보통 대규모의 위조품, 조직적인 침해, 소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침해 행위 또는 침해품, 그리고 반복적인 침해자와 같은 심각한 형사건을 우선시 한다. 경제경찰은 복잡한 침해건의 경우 조사를 위해 다른 단속 기관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단속 기관의 활동은 국가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권리소유권자가 경제경찰이 침해 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여 (금전적 기여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다.³⁶⁾ 이는 국가의 재정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단속 기관이 효과적으로 침해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속 기관에게 침해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 같은 의무적인 비용은 아니다.

36) 시행규칙 11

(ii) 절차

다음은 조사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형사 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단계와 관계당국에 대한 정보이다:

경제경찰의 조사와 사실 확인

- 고소장과 증거를 받으면 경제경찰은 직접 조사를 하여 해당건이 형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침해자의 창고, 사무실 등에 대한 급습을 할 수 있다.
- 권리소유권자는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제경찰과 협력하여 침해자에 대한 정보, 교통수단, 기술적 장비, 위조품 확인, 기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검찰의 기소

- 만일 형사건이라고 결정이 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사건은 기소를 위해 검찰에 이관된다. 검찰은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 경찰에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

- 일단 사건이 기소가 되면 법원은 재판을 하거나 검찰/경제경찰에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1심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가 없다면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

05 민사 소송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이 분쟁대응에 있어 첫 단계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 분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 지재권 관련한 민사건은 많지 않다. 이는 지재권에 대한 판사들의 경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큰 비용 등이 그 이유이다. 베트남은 아직 지재권 특화 법원이 없고 인민법원의 경제법원부서가 지재권 분쟁을 다루고 있다. 보통 매년 지재권 관련 민사건은 10건 정도이다.

그럼에도 예비적금지명령, 손해배상, 공개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장점으로 민사를 이용하는 권리소유권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관할권

베트남의 민사법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 최고법원
- 지역법원
- 지구법원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야한다.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베트남 민사소송절차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법원의 단계에 따른 관할권

-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지재권 분쟁은 지구 차원 민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³⁷⁾ 당사자 또는 재산이 외국과 관련이 있거나 해외 사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차원의 민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³⁸⁾.
- 상업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지재권 분쟁은 지역 차원 경제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³⁹⁾.

37) 민사절차법 35.1a와 36.1조

38) 민사절차법 35.3조.

39) 민사절차법 37.1a와 38.1조

(ii) 지역에 다른 관할권

지재권 분쟁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송의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원고가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⁴⁰⁾.

원고는 다음을 관할 법원으로 주장할 수 있다⁴¹⁾:

-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전에 거주 또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던 지역의 법원
- 분쟁이 지점의 운영에서 발생했을 경우, 피고가 사무실 또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법원
- 피고가 베트남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원고가 거주 또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법원
- 분쟁이 비계약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법원
- 분쟁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했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지역의 법원
- 피고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 또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피고 중 한 명이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법원

2) 구제 수단

지재권 관련 민사건은 다음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지재권법 상 지재권 침해와 분쟁에 대한 민사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
- 민사절차법상 분쟁을 다루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

지재권법 198.1b에 따르면 권리소유권자를 다음의 권리가 있다:

-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공개사과, 손해배상금 요구
- 법적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개시

40) 민사절차법 39.1조

41) 민사절차법 40.1조

지재권법 20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강제할 수 있다:

- 침해행위 중지
- 공개사과와 정정
- 민사상 의무 이행
- 손해배상 지급
- 권리소유권자의 권리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침해품의 생산과 거래에 사용된 상품, 원재료, 재료 등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배포, 사용, 또는 파괴

a. 손해배상

지재권법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권리소유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i) 손해배상 결정

물질적 손해는 다음을 포함한다⁴²⁾ -

- 재산상 손실⁴³⁾: 이는 지재권의 금전적 가치의 감소 또는 손해에 따라 결정된다. 금전적 가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 소유권 이전의 가격 또는 지재권 사용권 양도의 가격
 - 지재권의 형태로 기여된 사업 자본의 가치
 - 기업 총자산에서 지재권의 가치
 - 마케팅, 연구, 노동비, 세금, 기타 지출을 포함하여 지재권의 형성과 개발에 들어간 투자가치
- 수입과 이득의 감소⁴⁴⁾: (i) 지재권의 직접적 사용으로 얻어진 수입과 이득, (ii) 지재권의 임대를 통해 얻은 수입과 이득, (iii) 지재권을 사용할 권리의 양도를 통해 얻은 수입과 이득. 수입과 이득의 감소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 각 종류의 실제 수입과 이득의 침해행위 발생 전과 후의 비교
 - 실제 판매되고 공급된 상품과 서비스 양의 침해 행위 전과 후의 비교

42) 지재권법 204.1a조

43) 시행령 105의 17조

44) 시행령 105의 18조

-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소매 가격의 침해 행위 전과 후의 비교
- 사업기회의 손실⁴⁵⁾: 사업기회의 손실은 다음과 같은 사업기회를 통해 침해행위만 아니어도 권리소유권자가 실현했을 금전적 가치의 손실을 의미한다 -
 - 사업을 하기 위해 지재권을 직접 사용할 실제 가능성
 - 타인에게 지재권을 임대할 실제 가능성
 - 타인에게 지재권 사용에 대해 양도하거나 지재권을 이전할 실제 가능성
 - 침해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인한 기타 사업기회의 손실
- 이러한 손해의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⁴⁶⁾으로 (i) 침해품의 일시적 압류 및 보관, (ii) 예비적 금지명령 이행 비용, (iii) 침해평가 서비스 비용 및 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비용, (iv)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언론에 통지하는 비용

정신적 손해는 명예, 존엄, 명성에 대한 피해를 포함한다⁴⁷⁾.

(ii) 손해배상액 산정

만일 원고가 침해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다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전체 금전적 손실과 피고가 거둔 이득의 합산
- 피고가 침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해 라이선스 계약으로 지재권을 사용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했을 라이선스 가격
- 기타 권리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제안하는 계산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억 베트남동 (한화 24,511,193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손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원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원고는 법원에 손해의 정도에 따라 5백만 베트남동(한화 245,314원) 에서 5천만 베트남동 (한화 2,450,662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5) 시행령 105의 19조

46) 시행령 105의 20조

47) 지재권법 204.1b조

또한 원고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고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하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실무상 침해 행위로 발생한 실제손해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손해배상은 변호사 비용과 기타 침해 대응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 증명하기 쉬운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

b. 예비적 금지명령

지재권법 206조에 따르면 소송을 시작할 때 권리소유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법원에 침해품 또는 침해품의 생산과 거래에 사용된 원재료와 재료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 권리소유권자에게 복구 불가능한 손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 제때 보호되지 않으면 침해품과 관련 증거 훼손의 위협이 있을 경우

침해품과 침해품의 거래에 사용된 원재료, 생산시설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⁴⁸⁾ -

- 구류
- 압류
- 이동금지
- 소유권이전 금지

지재권법 208조에 따르면 원고는 예비적금지명령을 요청하기 위한 관련 요건의 증명의 책임을 가진다.

민사절차법 7장에 따르면 예비적금지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신청서에 포함해야한다 -

- 원고에 대한 정보
- 분쟁과 침해에 대한 요약

48) 지재권법 207조

- 예비적금지명령 신청의 이유
- 적용해야할 예비적 금지명령의 종류와 요건

예비적금지명령 요청서를 받으면 재판장은 즉각적으로 요청서를 처리할 판사를 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만일 거절결정이 나면 판사는 거절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급한다.

3) 절차

지재권 관련 민사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에 따르면 간단한 분쟁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가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일례로 12년이 소요된 저작권 분쟁건도 있었다⁴⁹⁾.

(i) 고소장 제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소장을 제출할때 예비적금지명령 요청서도 같이 제출할수 있다.

고소장은 침해에 대한 지재권 소유권, 침해 행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거는 민사절차법 7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 공증과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ii) 법원의 중재

이는 2018년부터 주요 16개 지역에서 소개된 분쟁대응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송 전 분쟁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원이 연결해주는 중재 또는 대화와 관련된 법을 이끌어냈다⁵⁰⁾. 중재는 민사분쟁에 적용이 되고 대화는 행정분쟁에 적용이 된다. 이는 법원의 적체현상을 해소하여 민사법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받고 있다.

49) <https://tuoitrenews.vn/news/lifestyle/20190219/artist-wins-copyright-row-over-characters-in-vietnams-longestrunning-comics-after-12year-lawsuit/48995.html>

50) 법원이 연결하는 중재와 대화에 관한 법 (Law No. 58/2020/QH14 on Court-connected Mediation or Dialogue)

새로운 법에 따르면 원고가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법원이 연결해주는 중재안에 대해 안내해주고 이러한 중재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원고가 동의하거나 또는 2번의 통지에도 답변을 안 하면 사건은 중재 센터에 이관된다. 사건을 위해 1명의 판사가 배정이 되어 중재 과정을 감독한다. 소송당사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중재자를 지명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중재는 중재자를 지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기한은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권리소유권자들이 민사 소송의 모든 절차를 겪지 않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하지만 권리소유권자가 법원이 연결해주는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장 처리를 신속히 하고 지연을 막기 위하여 이에 대해 법원에 빨리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것이 좋다.

(iii) 고소장 접수

만일 법원이 연결해주는 중재가 일어나지 않거나 실패하면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된다. 고소장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관은 사건 검토를 위해 1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판사 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사는 원고에게 소송비를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고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소송비가 납부되면 판사는 고소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소장 접수 통지가 원고에게 보내지고 피고와 관련자에게도 고소장이 받아들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가 보내진다.

(iv) 재판 준비

또 다른 판사가 사건에 배정된다. 재판의 준비는 고소장이 받아들인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상업적 목적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 또는 4개월 이내 (상업적 목적과 관련 없는 지재권 침해) 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의 적체와 판사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이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1심을 위한 재판 준비기간동안 판사는 소송당사자간에 증거의 교환과 소송전 중재를 위해 미팅을 주재한다.

원고와 피고가 중재를 거부할 경우 미팅은 증거의 교환, 접근, 공개 등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미팅 결과에 따라 판사는 사건을 중지할 것인지 재판으로 가져갈 것인지 결정을 한다.

(v) 1심 법원

민사절차법 203.4조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진행 결정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개월로 기한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상 이 시간은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루어지기도 한다⁵¹⁾.

1심이 성공적으로 열리면 다음의 절차가 따른다 -

- 재판 개시 절차
- 구두 변론
- 법원의 판결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이 판결은 양 당사자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vi) 항소 법원

만일 항소가 있으면 법원은 민사절차법 3조에 따라 항소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즉각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사례연구

재발되는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의 효과

원고는 피고에 대해 식물의 양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사용된 “BOOM-n Flower” 상표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BOMY japanag” 상표를 부착한

51) 민사절차법 233조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여러차례의 행정단속에도 침해가 계속되자 원고는 침해 중지 및 공개사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 “BOOM-n Flower” 상표등록증명서와 피고에 대한 행정제재결정
- 원고에게 유리한 비프리 침해감정서
- 민사건 해결을 위한 원고의 단독 유통업자와 로펌과의 수임 계약서

2018년 7월 10일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손해배상요구는 거절하였다.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액은 1천만 베트남동에 불과하였다. 2018년 7월 24일 원고는 변호사비를 보상받고자 항소하였고 2020년 5월 27일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변호사비용 지급은 거절하였다.

교훈:

- 승소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증명서, 비프리 결정문, 행정제재 결정 등 충분한 증거가 핵심이다.
- 법원은 보통 손해배상 지급에 있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권리소유권자는 침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직접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비를 배상금으로 받고 싶다면 로펌과의 수임계약서는 원고가 계약당사자여야 한다.

06 국경보호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과 수출품에 대해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세관은 권리 소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조품이나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만일 세관이 보류, 조사, 감시 과정에서 지재권 위조품을 확인하면 행정처벌의 집행을 위해 행정제재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세관은 권리소유권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정품/위조품 식별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세관 교육을 매년 열어왔고 이를 통해 세관 공무원은 의심되는 위조품의 식별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실무적으로 세관은 수출품보다는 수입품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권리소유권자는 침해품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에 있는 생산 시설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한다.

권리소유권자는 세관등록을 하고 세관공무원을 교육함으로써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침해품에 대해 최전선에서 감시하는 세관과 협력할 수 있다. 침해품이 의심되는 배송물이 발견되면 권리소유권자는 세관에게 추가적인 조사와 침해 대응을 위해 이러한 배송물의 통관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관등록은 지재권과 관련된 상품의 수출입 활동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권리 소유권자는 그들의 주요한 지재권과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세관등록을 할 수 있다. 세관 등록은 15개의 국제 항구, 6개의 국제 공항, 19개의 국경 출입구를 포함하여 베트남 전체 40개의 항구와 국경 출입구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13의 6조에 따르면⁵²⁾, 권리소유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일반세관부에 세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제공된 양식으로 수출입 상품의 감시와 조사 요청
- 등록증명서, 라이선스 등록 등 지재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위조품과 정품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지재권 위조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52) 시행규칙 13

- 등록할 상품의 HS 코드
- 정품의 공식 수입/수출업자 목록
- 침해품의 수입/수출업자 목록

관세법 74.2조에 따르면⁵³⁾, 세관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추가적으로 2년 더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요청은 세관등록 만료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⁵⁴⁾.

세관은 등록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수출입을 감시하여 지재권침해 또는 위조품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 보류를 하게 된다.

1) 보류 절차

시행규칙 13의 14.1조는 세관이 지재권 침해의 조짐이 있는 배송물을 발견했을 시 통관 절차를 중단하고 권리소유권자에게 의심되는 침해품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면 권리 소유권자는 해당 배송물의 보류를 요청할 시간이 3일 주어지고 요청시 배송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환불 가능한 선수금 또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기 힘들 경우 베트남동 23,059,977 의 선수금을 내야한다.

보류 요청서와 선수금을 받으면 세관은 보류를 진행한다. 보류 기한은 보류결정발급일로부터 10일이다. 지재권 당국으로부터 기술적 의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보류는 자문서가 나올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류를 통해 세관은 권리소유권자, 상품의 소유권자와 함께 해당 상품을 조사한다. 만일 상품이 침해품/위조품으로 밝혀지면 세관은 수입업자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린다. 보통 벌금과 위조품의 파괴가 처벌이다. 만일 침해가 발견되지 않으면 세관은 통관절차를 재개하고 권리소유권자는 보류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지급을 해야한다.

53) 관세법 (Laws No. 54/2014/QH13 on Customs)

54) 시행규칙 13의 8조

2) 세관 교육

위조품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세관의 능력은 세관등록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와 세관공무원이 받는 교육에 달려있다. 이에 베트남 세관은 1년에 2-3차례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서 세관 교육을 실시한다.

세관 교육을 통해 권리소유권자들은 세관 공무원에게 자신의 브랜드와 정품/위조품 식별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IV

위조품과 침해품에 대한 온라인 침해 대응

01. 온라인 증거 수집 _ 55

- 1) 온라인 조사와 키워드 _ 55
- 2)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_ 56

02. 온라인 게시중단 _ 58

-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과
게시중단 절차를 통한 게시중단 요청 _ 58
- 2)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보고 _ 61
- 3) 베트남에서 “.vn” 도메인 이름 분쟁 _ 61
- 4) 사이트 차단 _ 62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베트남 소비자들은 주로 4개의 수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독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상거래 앱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는 쇼피, 라자다, 티키, 센도가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다.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많이 사용되는 쇼핑의 창구이고 모바일 상거래 앱은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⁵⁵⁾.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잘로,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이 쉽기 때문에 소규모 소매상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⁵⁶⁾. 하지만 아직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쇼핑의 창구이다⁵⁷⁾.

이런 전자상거래의 호황에 편승하여 온라인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대응이 더 힘든데 그 이유는 거래자가 수백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중 몇 개의 계정이 게시중단 조치가 되면 빠르게 이러한 계정은 비활성화하고 모든 거래의 증거를 삭제한 후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서 침해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 대응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온라인 거래자에 대해 조사하고 신원정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거래자의 계정에 공시된 주소는 의도적으로 숨겨지거나 가짜 주소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거래자는 보안이 철저한 건물에서 거래를 하고 상품의 배송은 그랩 같은 교통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⁵⁸⁾.

위조품과 침해품은 페이스북의 라이브를 통해서도 홍보와 판매가 되기도 한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틈을 타 라이브 스트리밍이 소비자를 끌고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판매가 되고 있는 위조품은 썬그라스, 가방, 신발, 의류 등이고 구찌, 샤넬, 헤르메스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위조품이 많다. 정품임을 주장하면서 매우 낮은 가격에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판매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55) <http://www.ukabc.org.uk/wp-content/uploads/2018/09/EVBN-Report-E-commerce-Final-Update-180622.pdf>

56) <https://e27.co/ecommerce-wars-in-vietnam-intensify-heres-all-you-need-to-know-20200312/>

57)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data-speaks/vietnamese-prefer-facebook-shopping-for-fashion-products-397793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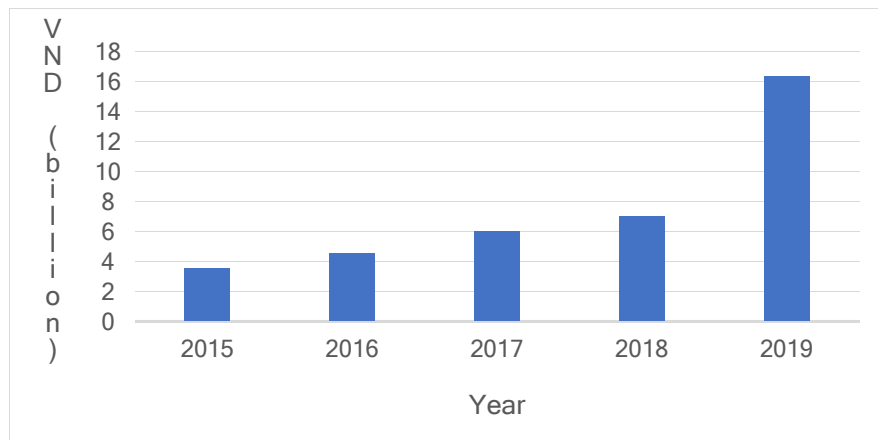
58) <http://tapchicongthuong.vn/bai-viet/nan-hang-gia-trong-thuong-mai-dien-tu-quan-ly-chat-cac-tai-khoan-ban-hang-67892.htm>

59) <https://tuoitrethudo.com.vn/hang-gia-hang-nhai-tung-hoanh-tren-mang-xa-hoi-85695.html>

60) <https://laodong.vn/thi-truong/livestream-sale-sap-san-ban-hang-gia-duoi-lot-hang-xuat-du-818899.ldo>

침해자들은 또한 “선등록주의”의 원칙을 이용하여 저명한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 이름을 먼저 등록할 수 있다. 사이버스쿼팅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정품인 것처럼 속여 권리 소유권자가 상표에 투자한 선의와 명성을 자신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이 의도이다.

온라인에서 위조품과 침해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2019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위조품과 침해품에 대해 2403건이 조사가 되었고 2213건의 침해건이 다루어졌다⁶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삭제가 된 위조품의 수는 35,943 건이고 3126개의 계정이 삭제되었다.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품과 지재권 침해품을 거래하는 침해자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의 액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벌금이 2018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60억 베트남동 (한화 784,755,505원) 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⁶²⁾.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시장에서 지재권 침해품과 위조품을 거래하는 자에게 내려진 제재결정을 통해 거두어진 벌금의 액수]

2020년 2월 28일 베트남 시장관리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품과 지재권 침해품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368을 설립하였다⁶³⁾. 태스크포스 368은 전자상거래 상 위조품과 지재권 침해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61) <https://tuoitre.vn/hang-gia-tren-san-thuong-mai-dien-tu-phai-tang-trach-nhiem-cua-cac-chu-cho-2020-0912202551378.htm>

62) <https://www.moit.gov.vn/web/guest/tin-chi-tiet/-/chi-tiet/%C4%91ay-manh-xu-ly-vi-pham-trong-thuong-mai-%C4%91ien-tu-19697-1001.html>

63) 결정 368 (Decision 368/QĐ-TCQLTT)

01 온라인 증거 수집

1) 온라인 조사와 키워드

일반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조사는 구글 같은 강력한 검색 엔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검색의 첫 단계는 키워드 입력이다. 키워드가 정확할수록 더 관련성이 있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온라인 침해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온라인에서 침해행위를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이 그들의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이전에 온라인 침해자들은 상품의 공식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의 상품을 설명하는 식의 매우 간단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온라인으로 정품을 찾는 소비자의 방문을 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브랜드 소유권자들은 브랜드 보호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게시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감시하고 이러한 위조품과 침해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빠르게 확인하여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침해 문제는 베트남에서 여전히 심각하다. 침해자들은 브랜드 보호 도구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 위조품 게시물의 불법적 성격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키워드를 사용한다. 다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

- 위조품/침해품 (보통의 경우 낮은 가격)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간단한 키워드나 일반적인 설명 사용: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온 티셔츠” 또는 “한국 백팩”
- 브랜드 이름을 베트남어로 바꾸어 다른 언어를 사용
- 키워드에 하이픈을 쓰거나 분리하거나 오기하는 방식으로 대안적 키워드의 사용: 예를 들면 “B r a n d N a m e”을 “B-r-a-n-d N-a-m-e”의 방식으로 사용
- 커머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로고나 브랜드 이름을 가림

또한 소셜 미디어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한 침해품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침해자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권리소유권자가 브랜드 보호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게시중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현지 지재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온라인 감시와 게시중단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나 게시중단 서비스 공급자는 현지 시장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단순한 침해건만 다룰 수 있다. 현지 지재권 전문가는 다음을 도울 수 있다 -

- 온라인 게시중단 서비스 공급업자와 협력하여 키워드 감시에 대해 피드백 제공
- 현지시장 전문가의 전문성 있는 감시. 키워드를 감시하고 업데이트 하여 침해자 진화하는 침해의 수준을 잘 따라잡음
- 소셜 미디어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같은 자동화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응의 어려움에 대처
-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게시중단 프로그램에 협력을 구함

온라인 감시의 결과에 따라 권리 소유권자는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여 지재권 보호에 있어 허술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재권 등록 및 세관 등록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침해대응 행위를 취할때 권리소유권자는 이러한 대응조치가 오프라인 침해대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대규모 침해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침해 대응을 조심스럽게 조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례연구

온라인으로 위조품과 밀수품을 거래하는 대규모 침해자에 대한 급습⁶⁴⁾

2020년 7월 7일 베트남 시장관리국은公安부와 협력하여 라오까이 시의 1만평이 넘는 창고에 대해 급습을 진행했다. 창고에서 단속기관은 대략 16만 개의 다양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밀수품과 위조품을 압수했다.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던 3명의 직원이 잡혔다. 각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이후, 40명 이상의 직원이 주문, 포장, 배송을 위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 창고의 주인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며 아주 조직적인 업무 체계를 가지고 2018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에 기반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침해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사업을 운영해 와서 이 창고에 대해 조사하여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데만 해도 5개월이 소요가 되었다. 급습 계획도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현지의 단속기관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형사기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량의 위조품 압류로 이 사건은 아마도 형사기소를 위해 검찰에 이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훈:

- 베트남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위조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온라인 감시를 할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거래자에 의한 라이브 스트리밍도 포함해야 한다.
- 관계당국이 온라인 침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직권으로 대응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64) <https://congthuong.vn/vu-kho-hang-10000m2-tai-lao-cai-thue-34-container-cho-hon-158000-san-pham-vi-pham-nhap-lau-140397.html>

02 온라인 게시중단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적권 정책과 게시중단 절차를 통한 게시중단 요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대다수 플랫폼에서의 지적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지적권 침해품의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와 정보통신부의 규정을 따른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52/2013/ND-CP (시행령52)는 다음을 규정한다 -

- 위조품과 지적권 침해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침해 행위에 대한 통지를 받았거나 침해행위를 발견했을 시 즉각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거래행위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권리소유권자가 직접 위조품 또는 침해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게시중단 절차의 처리는 보통 7-14일이 소요가 된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게시중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게시중단 절차	출처
쇼피 (Shope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쇼피가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 (Complaint Form) 을 작성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쇼피에 통지를 하고 고소장 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2. 다음의 주소로 직접 또는 등록되어 있는 공식스토어의 운영자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주소: cskh@hotro.shopee.vn 또는 support@shopee.vn • 고객센터: Customer Support Site 	https://shopee.vn/docs/3602
라자다 (Lazada)	<p>지식재산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 (IPP Platform)사용 IPP 플랫폼은 알리바바 그룹이 개발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소유권자가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 포함)에서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p>이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는 계정을 만들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계정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장 처리 진행상황을</p>	https://pages.lazada.vn/wow/i/vn/LandingPage/IPR?spm=a2o4n.home.footer_top.14.19056afeNn6oOo;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게시중단 절차	출처
	<p>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들이 고소장 하나당 포함시킬 수 있는 침해게시물의 수는 200개에 한정된다.</p> <p>2. 이메일을 Trust@lazada.com 통해 침해통지 접수 침해의 양상이 복잡하거나 IPP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는 침해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여 다음의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또는 권한을 주는 서한 •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침해 게시물 목록 • 침해에 대한 증거 (예를 들면 위조품 샘플) •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나 대리인의 연락처 	
<p>센도 (Sendo)</p>	<p>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과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의 요청을 포함한 공식 서한을 준비하여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또는 권한을 주는 서한 •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사본 •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 침해 게시물 목록 <p>2. 공식서한과 위의 서류를 직접 센도의 등록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lienhe@sendo.vn</p>	<p>https://ban.sendo.vn/chinh-sach-n-guoi-ban/35-2-quy-dinh-mo-shop/92-quy-dinh-mo-shop</p>

비록 권리소유권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 처리를 하고 있지만 게시중단 요청이 요건만 잘 갖춘다면 대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런 게시중단 요청에 매우 협조적이다.

만일 위조품/침해품인지 여부가 침해 게시물의 정보와 사진을 통해 확인이 어렵다면 샘플 구매를 통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여 플랫폼에 게시중단 요청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실무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분명한 침해의 경우 (위조품), 즉각적으로 침해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복잡한 침해의 경우 플랫폼은 권리소유권자에게 비프리 전문가의견 또는 관계당국에서 받은 침해 확인서 같은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권리소유권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을 받으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통 판매자에게 수입 라이선스, 침해게시물에 명시된 상품의 합법적 출처에 관한 서류, 상품의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래자가 밀수품이나 출처가 불명확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게시물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판매자가 기한 내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즉각적으로 침해 게시물을 중단하거나 삭제한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관련한 지적권 침해 사건이 아직 많지는 않다. 대다수의 침해건은 보통 명백한 침해건이고 소규모 침해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침해건은 보통 게시중단 절차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있다.

사례연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게시중단

독일의 다국적 기술회사가 베트남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백개 이상의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였다.

위조품 게시물 목록을 수집하여 7개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lazada.vn, shopee.vn, sendo.vn, 5giay.vn, vatgia.com, thitruongsi.com and chotot.com)에 게시중단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회사는 각 플랫폼과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follow-up을 하여 모든 게시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수천개의 침해게시물이 삭제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후 위조품의 판매량은 급감하였다.

첫번째 게시중단 조치 이후에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하여 3개월 후 추가적인 게시중단 요청을 하였고 침해게시물의 수는 처음보다 반으로 줄었고 각 플랫폼은 더 신속하게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교훈:

- 베트남에서 온라인쇼핑이 호황이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침해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게시중단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때문에 사건의 진행을 위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침해 게시물이 다시 나오고 있는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유용

2)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재권 침해 보고

베트남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게시중단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권리소유권자는 각 플랫폼의 요건에 맞추어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권리소유권자가 이러한 플랫폼에 게시중단 요청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침해를 발견하자마자 즉각 침해에 대한 증거 (사진, 링크, 비디오, 콘텐츠 캡처) 확보
- 권리소유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지재권 등록증명서, 위임장, 거래 상품의 위조품/침해품에 대한 확인 같은 확실한 증거 제출
- 침해 사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플랫폼과 소통하고 게시중단 요청서를 내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follow-up으로 침해게시물 삭제를 신속히 해 달라로 플랫폼 설득하는 작업 중요

3) 베트남에서 “.vn” 도메인 이름 분쟁

사이버스쿼팅은 베트남에서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 기업의 유명한 상표 또는 비슷한 상표를 포함한 “.vn”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가 그렇다. 사이버스쿼터는 상표소유권자의 명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끌고 판매량을 높이려고 하거나 상표소유권자에게 돈을 받고 도메인을 이전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상표를 허가없이 도메인이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다.

베트남에서는 먼저 등록하는 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소유권자는 사이버스쿼팅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핵심적인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두면 좋다.

베트남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등록자와 협상
- 사건의 해결을 위해 중재 신청
- 도메인 이름의 사용 및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단속
- 민사 소송

실무상 협상과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권리소유권자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과학기술부 조사단의 행정단속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이트 차단⁶⁵⁾

저작권 소유권자는 관계당국에 중간서비스공급업자 (ISP)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 및 중지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권리소유권자의 고소장을 받으면 관계당국은 침해사실을 확인 후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의 방송전자정보 당국은 침해 플랫폼에 대해 경고를 게시하고 침해 게시물 삭제에 대한 기한을 설정한다. 플랫폼이 이러한 기한 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전자 정보 당국은 베트남 ISP에 공식서한을 보내 침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절차는 현지와 외국 플랫폼 모두에 적용이 된다.

합동시행규칙 07의 5조와 시행령 15의 102조



V

기타 집행 수단

01.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e Dispute Resolution) _ 65

02. 경고서한과 합의 _ 66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Vietnam

01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지재권법 198.1d 조에 따르면 권리소유권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미리 중재를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중재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은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을 통해 이러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중재는 민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 비용과 시간 효율적인 간단한 중재 절차
- 당사자간 협상의 비밀성 유지

02 경고서한과 합의

지재권법 198.1b조에 따르면 권리소유권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서한을 보내 침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지서한 발송 후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follow-up을 하면 분쟁해결에 매우 효과적이다. 침해중지를 약속한 침해자의 서약서 등을 통해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 현지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용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지원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신청기업	출원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신청
KOTRA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용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용 하락, 70%→50%→30%)								

※ 협의제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사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 현황 파악, 출처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사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 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 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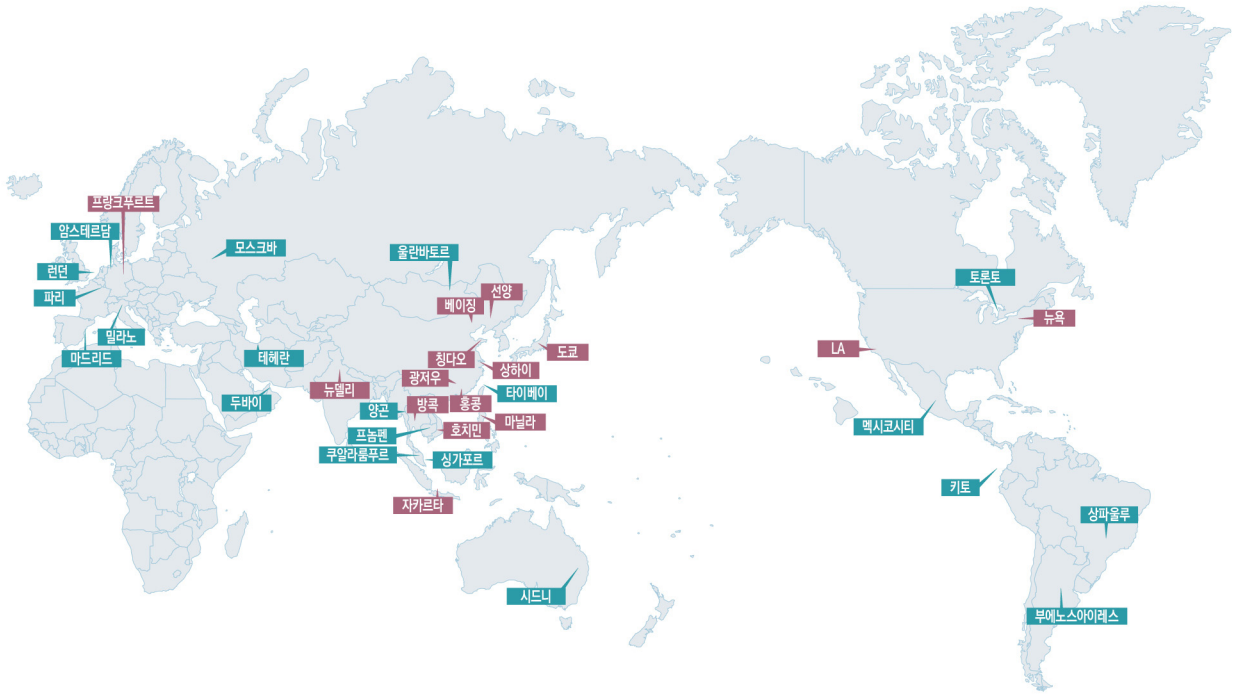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9개국 15개소
 ●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수행 : 20개국 20개소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laipdesk@kotra.or.kr
	뉴욕	1-646-918-5594 graceahn@kotra.or.kr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donghee.lee@kotra.or.kr
일본	도쿄	81-3-6273-4638 dhwon@kotra.or.kr
태국	방콕	66-2-035-1558 bkk_ipdesk@kotra.or.kr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seaegghr@kotra.or.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juheelee@kotra.or.kr / juheejkt@gmail.com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manila@kotra.or.kr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lsoojung@kotra.or.kr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ipkotra@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118) shanghaiip@kotra.or.kr
		86-21-5108-8771(116) MFJin@kotra.or.kr
	칭다오	86-532-8388-7931(209) qdxuxiang@kotra.or.kr
	광저우	86-20-2208-1600(1405) shane.bai@kotra.or.kr
	선양	86-24-3137-0770(813) ipdesksy@kotra.or.kr
	홍콩	852-3465-2921 hkg_ipdesk@kotra.or.kr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호치민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KOTRA자료 20-229

발행인 : 권 평 오
발행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호치민무역관(IP-DESK))
발행일 : 2020년 12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02-3460-3357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저 자 : 이윤영 변호사
Rouse Legal Vietnam Ltd.

ISBN 979-11-6490-550-8 (93320)
979-11-6490-551-5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